가구 관련 환경성 표시 광고 위반 사례

- E1 등급 자재에 대한 "친환경" 표기 -

□ 가구 관련 환경성 표시·광고 유의사항

"친환경"과 같이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한 표시·광고를 할 때에는 제품 전 과정을 고려한 환경성이 개선된 사실에 대한 객관적고학적 근거를 통해 실증할 수 있어야 함

- 환경성이 개선된 사실이 없거나, 구체적인 근거자료로써 실증할 수 없을 경우에도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에 해당
- ① 법적 최소기준 E1등급* 자재 사용 가구에 '친환경' 표기는 부당

 E1등급(목재재질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은 실내용 가구가 갖추어야 하는 법적 최소기준(KC인증기준)이며, 통상 E1등급보다 높은 E0등급 이상의 목재재질을 사용해야 친환경 가구의 요건 중의 하나[※]로 보기 때문에 E1등급 자재는 환경성 개선과는 무관하며, E1등급 자재를 사용한 것에 대해 '친환경'이라 표시·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
 - ※ 환경부의 환경마크 인증기준(EL172. 가구)에서는 가구에 사용되는 목재재질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기준을 EO수준인 0.5 mg/L 이하로 정하고 있음

(참고) KS규격에 따른 목재재질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등급표

| 등급 |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 비고 |
|-----|------------|-----------------------------------|
| SE0 | 0.3mg/L 이하 | - 환경부 환경마크 인증 요구 |
| E0 | 0.5mg/L 이하 | 수준(0.5 mg/L 이하) |
| E1 | 1.5mg/L 이하 | KC인증 최소 안전 요구 사항 (1.5 mg/L 이하) |
| E2 | 1.5mg/L 초과 | - |

② 친환경 가구: 제품 환경성 개선에 대한 근거자료(환경마크 인증서 등) 필요

'친환경' 등 환경성 표시·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제조, 소비, 폐기 등** 전 과정에 걸쳐 환경성을 개선하였다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갖추어야 하며, 이는 환경마크 인증을 획득하거나 전 과정을 고려한 환경성 개선 사항을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실증할 수 있어야 함

※ 예컨대 가구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자재(페인트, 접착제, 합성수지 시트, 사출물, 금속부품 등)가 있는데 E0등급 이상의 목재재질의 자재를 사용했다는 것 만으로는 제품 전과정을 고려한 환경성 개선을 이루었다고 보기 어려움

□ 주요 질의응답

Q: 가구 목재재질의 E1, E0 등의 등급은 어떻게 나눈 것인가요?

A : 보통 합판, 특수가공치장 합판, MDF(중밀도섬유판), PB(파티클보드) 등 가구류에 사용된 목재재질에 대해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을 기준으로 E2** 등급부터 super E0등급까지 등급을 나눈 것입니다.

| 등급 |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 비고 | |
|-----|------------|--------------------------------------|--|
| SE0 | 0.3mg/L 이하 | 환경부 환경마크 인증 | |
| EO | 0.5mg/L 이하 | 요구 수준 (0.5 mg/L 이하) | |
| E1 | 1.5mg/L 이하 | KC인증 최소 안전 요구 사항 (1.5 mg/L 이하) | |
| E2 | 1.5mg/L 초과 | - | |

(출처: 한국산업표준 KS F 3200, KS F 3104 등)

- 법정강제 인증인 KC인증과 관련하여「안전·품질표시기준」(기술표준원 고시)에 의해 가정, 사무실, 학교 등에서 사용하는 책상 및 테이블, 의자, 옷장·이불장, 사무용 캐비넷·파일 캐비넷·로커 등 가구류에 대하여 안전요구 사항은 목재재질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이 1.5mg/L 이하이어야 하며, 이는 E1등급에 해당합니다.

Q: E1 등급 자재를 사용한 것을 왜 "친환경 가구"라고 할 수 없나요?

A: KC 인증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근거로 "친환경" 등 환경성을 주장하는 것은 동일용도 다른 제품에 비해 환경성을 개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환경성을 개선한 것처럼 표사광고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입니다.

따라서 시중에 유통되기 위해 모든 가구류가 의무적으로 충족하고 있는 법적최소기준인 E1등급 자재 사용을 근거로 '친환경'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제5조제5호 "환경성 개 선의 자발성" 기본원칙에 위배됩니다.

Q: 그럼 EO 등급 자재를 사용한 가구는 "친환경"인가요?

A: E0 등급의 자재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E1등급 자재에 비하여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이 낮으므로(0.5mg/L이하) E1등급 자재보다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에 있어서는 환경성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 습니다. 참고로 환경부 환경마크 인증기준(EL172. 가구)에서는 가구에 사용되는 목재재질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기준을 E0등급 수준인 0.5 mg/L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E0등급의 자재를 사용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친환경 가구" 인 것은 아닙니다. 가구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자재 (페인트, 접착제, 합성수지시트, 사출물, 금속부품 등)가 있는데, 일부 자재의 환경성이 개선된 것만으로는 제품전체의 환경성 개선이 고려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Q: 어떤 제품이 "친환경 가구", "친환경 자재" 인가요?

A: 환경성 표시·광고를 하려는 제품이 해당 품목에 대한 환경마크 인증을 받았거나, 제품 전과정을 고려한 환경성 개선 사항에 대한 객관적·과학적 근거자료를 통해 실증이 가능한 경우, 인증 받은 사유 및 환경성 개선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친환경 가구" 또는 "친환경 자재"로 표시·광고 할 수있습니다.

"친환경제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하여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을 말합니다. 여기서 환경성은 "재료와 제품을 **제조·소비·폐기하는 전 과정에** 서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등을 배출하는 정도 및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정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환경마크는 동일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하여 생산·유통·사용· 폐기 등 전 과정 각 단계에 걸쳐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하여 해당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환경마크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도 동일한 용도의 제품에 비하여 전 과정을 고려하여 전반적인 환경성을 개선하였을 경우 친환경 제품 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과학적 근거가 반드 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또한 "친환경" 등과 같은 포괄적인 환경성 표현을 사용할 경우에는 제품의 환경성 개선에 대해 소비자가 해당 제품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환경적 속성 및 효능을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구체적인 설명을 포함하거나 환경성 개선 범위를 한정하여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의 오인성이 없도록 표시·광고하여야 합니다.

| 잘못된 예시(X) | 올바른 예시(O) | |
|------------------------------------------------------------------------|----------------------------------------------------------------------------------------------------------------------------------------------------------------|--|
| * E1등급 친환경 가구, * E1등급 친환경 자재 사용, * 구체적인 근거나 환경성 개선 범위 한정 없이 "친환경 가구" | * KC인증 기준에 부합하는 E1등급 자재 사용, * 환경마크 인증(유해물질 감소, 실내공기오염물질 감소) 취득한 친환경 가구 * 폼알데하이드 방출 저감 E0등급 자재 사용 * 실내 공기오염물질 배출 감소 E0등급 자재 사용 * 환경마크 인증 취득한 친환경 E0등급 자재 사용 | |

[참고] 환경마크 인증기준 발췌(EL 172 가구, EL 723 목재 성형 제품)

※ 가구 제품의 환경마크 인증 기준(EL 172) 중 환경 관련 기준

가구에 관련된 환경마크 인증 기준에서 환경성 기준은 아래와 같이 원료취득부터 제조, 유통사용소비 및 폐기 단계에서의 전과정을 고려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항목별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4 환경 관련 기준

가구의 전과정 단계를 고려한 환경성 항목은 표 1과 같다.

표 1 가구 제품의 전과정 단계별 환경성 항목

| 전과정 단계 | 환경성 항목 | 환경 개선 효과 |
|------------|------------------------------|-------------------|
| 원료취득 | ■ 지속 가능 산림 자원 | ■ 자원 절약 |
| 제 조 | ■ 폐목재 사용량 | ■ 유효자원 재활용 |
| 제조 | ■ 금속 재료 가공 | ■ 유해물질 사용 감소 |
| | ■ 식탁 상판 합성수지 | ■ 유해물질 사용 감소 |
| | ■ 제품 표면 합성수지 시트 | ■ 유해물질 사용 감소 |
| | ■ 제품 표면 페인트 | ■ 유해물질 사용 감소 |
| | ■ 니켈 방출량 | ■ 인체 유해물질 노출 감소 |
| | ■ 합성수지 난연제 | ■ 유해물질 사용 감소 |
| 유통·사용·소비 | ■ 합성수지 유해원소 함량 | ■ 유해물질 사용 감소 |
| 118 18 4-1 | ■ 목재 방부재 | ■ 인체 유해물질 노출 감소 |
| | ■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 ■ 실내 공기오염물질 배출 감소 |
| | VOCs 방출량 | ■ 실내 공기오염물질 배출 감소 |
| | ■ 실내 공기질 영향 표시 | ■ 실내 공기오염물질 배출 감소 |
| | ■ 부품 공급 | ■ 폐기물 발생 감소 |
| | • 제품 표면재료 | • 유해물질 사용 감소 |
| TH 71 | ■ 할로겐계 합성수지 | ■ 유해물질 사용 감소 |
| 폐기 | ■ 금속재료 | ■ 재활용성 향상 |
| 재활용 | 3.54 | |

※ 목재 성형 제품의 환경마크 인증 기준(EL 723) 중 환경 관련 기준

마찬가지로 목재 성형 제품(MDF, PB, 합판 등의 목질 자재) 역시 환경마크 인증 기준에 따라 해당 환경성 항목을 충족해야만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환경 관련 기준

목재 성형 제품의 전과정 단계를 고려한 환경성 항목은 표 1과 같다.

표 1 목재 성형 제품의 전과정 단계별 환경성 항목

| 전과정 단계 | 환경성 항목 | 환경 개선 효과 | |
|--------------------|-----------------------------------|-------------------|--|
| 원료취득 | | | |
| TI X | ■ 목재 사용 비율 | ■ 자원 절약 | |
| 제조 | ■ 폐목재 사용률 | ■ 유효자원 재활용 | |
| 0 E . II O . A III | ■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 ■ 실내 공기오염물질 배출 감소 | |
| 유통·사용·소비 | VOCs, 톨루엔 방출량 | • 실내 공기오염물질 배출 감소 | |
| 폐기 | | | |
| 재활용 | 재활용 | | |

가구 및 목재 성형 제품 등 대상제품별 환경마크 인증기준에 대한 세부 내용은 환경마크 웹사이트(http://el.keiti.re.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